

번 호	제 호	
연 월 일	2020. . .	

적 합 성 평 가 관 리 등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제 정 령 안

제출 연월일	2020. . .
--------	-----------

법제처 심사 전

1. 제정 이유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21. 4. 8.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 오류 성적서의 범위, 공인기관 명칭 사용중지 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 제도 도입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 대상인 오류 성적서의 범위를 규정(안 제2조)

오류로 인하여 적합·부적합 등 평가 결과가 변경된 성적서를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오류가 있는 성적서로 규정함

나. 전문기관에 부정행위 조사 업무 위탁 사항을 규정(안 제3조)

독립성과 조직 및 업무수행체계 확보 등 전문기관의 요건을 규정하고, 부정행위 신고·접수, 자료요구, 사업장 조사 등 위탁 업무의 범위를 규정함

다. 인정기구의 설치(안 제4조)

공인기관을 인정하는 인정기구를 국가기술표준원에 설치·운영함을 규정

라. 공인기관 명칭 사용중지 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 제도 도입(안 제5조)

공인기관이 사용중지 처분의 사유가 되는 결함을 시정하고 해당 처분으로 인해 적합성평가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등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건과, 과징금 금액 산출기준을 규정함

마.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 기준을 규정(안 제6조)

인정업무 관련 독립성과 평가 인력 확보 등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 기준을 규정

바.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안 제7조 ~ 제9조)

지정 신청 및 평가절차, 지정범위 확대, 갱신평가 등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을 위한 세부 절차와 사항을 규정함

사. 적합성평가 실태조사 주기를 규정(안 제10조)

매년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필요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

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을 규정(안 제11조)

대학, 적합성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위한 세부 기준을 규정

자. 부정행위로 처벌받은 사항에 대한 공표방법을 규정(안 제12조)

부정행위 발생 사실을 국표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반복 발생, 중대 위반 행위 등 필요시 신문, 방송을 통해 공표할 수 있음을 규정

차. 수수료 부과기준, 권한의 위임,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안 제13조 ~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타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적서 발급 등) 법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류가 있는 성적서는 다음 각 호의 오류로 인해 적합(適合)·부적합(不適合) 등 평가 결과가 변경된 성적서를 말한다. 다만, 법 제8조에 따른 인정과 관련이 없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성적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1. 시험항목의 누락
2. 측정기준의 오적용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오류

제3조(전문기관)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기관에 부정행위 조사를 위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민법 등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거나, 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일 것
2. 공인기관 및 적합성평가사업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조사활동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지닐 것

3. 법 제6조에 따른 조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 및 업무수행체계를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성적서 관련 부정행위 조사를 위해 법 제6
조제1항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성적서 관련 사업장 조사를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
식의 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조사원증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전문기관이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인정기구의 설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정
기구를 국가기술표준원에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5조(과징금)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공인기관이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 사용중지 처분의 사유가 되는 결함을 시정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다.

1. 동일 분야 공인기관이 모두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의 사용중지
처분을 받은 경우

2.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의 사용중지 처분으로 인해 적합성평가 수
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
정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과징금 부과에의 근거가 되는 조항 및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일정 기간 내에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⑤ 과징금의 수납기관이 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기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경영체제 인정기구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법 등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적합성평가 관련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단체일 것
2. 인정활동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지닐 것
3. 해당 인정업무 관련 지식을 보유한 사람이 5명 이상 상시 근무할 것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구 요건을 갖출 것

제7조(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경영체제 인정기구로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현황 및 인력현황,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고유번호증
2. 신청분야
3.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실적
4. 품질매뉴얼 및 절차서
5.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15조제2항에서 ‘해당 경영체제 인정기구가 수행하는 분야’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신청서류평가와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경영체제 인정기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평가방법, 절차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영체제 인정기구로 지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서를 교부한다.

1. 지정번호
2. 지정일자
3. 기관명, 법인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 사업장소재지

4. 유효기간

5. 지정분야 및 범위

제8조(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범위 확대) ① 경영체제 인정기구로 기 지정 받은 분야 및 범위를 확대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경영체제 인정기구가 신청한 분야에 대해 제6조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평가는 제7조에서 정한 절차를 따른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신청서류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경영체제 인정기구 갱신평가) 경영체제 인정기구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갱신평가를 받은 수 있도록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재평가를 위해 갱신평가를 신청해야 하며, 갱신평가는 제7조에서 정한 최초 지정 평가절차를 따른다.

제10조(실태조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수행하되, 정기조사는 매년 1회 실시하고 필요할 때 추가로 조사할 수 있다.

제11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적합성평가 관련 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기관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등 각종 학교)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 적합성평가 관련 업무를 주 업무로 하는 기관
 3.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단체
 4. 1호에서 3호 외에 각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중 적합성평가 관련 업무를 주 업무로 하는 기관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제12조(처벌 등의 공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표를 인터넷 홈페이지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관련 기관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공표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표대상자로 선정된 기관이 같은 조 제1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 위반행위가 중대한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공표 외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에 공표할 수 있다.
- ③ 제2항부터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수수료) 법 제24조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4조(권한의 위임·위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적합성평가 관련 업무
2.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오류가 있는 성적서 관련 업무
3.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법 제5조 위반 성적서 조사
4.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부정 성적서 조사 결과 회신
5.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조사 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6.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공무원의 파견
7.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부정성적서 유통차단 조치 관련 업무
8.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정기구 설치·운영
9.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인정 업무
10.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인정기준 고시
1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인기관 인정 신청 접수
12.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공인기관 인정 평가 및 인정 여부 결정
1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공인기관 인정서 교부
14.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공인기관 재평가
15.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인정마크 제작
16. 법 제12조에 따른 정기검사, 특별검사 실시
17.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인기관 인정취소,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 사용중지, 개선명령
18.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인기관 인정취소,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 사용중지, 개선명령 공고 및 통보

19.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인정서 반납 업무
20.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21.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
2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
23.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경영체제 인정기구 재평가
24.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취소, 업무정지 명령
25.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도·감독 및 지원
26.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실태조사
27.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청
28.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29.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
30.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취소, 업무정지 명령
3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제동향 파악 및 국제협력 촉진
32.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한 사업 추진
33. 법 제19조에 따른 적합성평가 기술개발 등을 위한 사업 추진
34.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 관련 시설·장비 현황 조사
35.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적합성평가 관련 시설·장비 고도화 등 계획

수립

36.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적합성평가 관련 시설·장비 확충 또는 고도화를 위한 경비 지원

37.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38.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검사

39.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검사계획 통보

40.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처벌 등의 공표

41.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소명 및 의견진술 기회 제공

42. 법 제23조에 따른 청문

43. 법 제2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28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의 사용중지 명령 등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제5조 관련)

1.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제2항에 의하여 산정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에 사용중지명령 기간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2.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연간 매출액을 최대 사용중지명령 일수로 나눈 후 0.07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며, 금액은 천원 단위에서 절사한다.
3. 제2항의 연간 매출액의 기준연도는 해당 업체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로 기준으로 한다. 다만, 휴업 등에 따라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 순으로 산출 또는 조정한다.
4. 제2항의 연간 매출액 산정범위는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의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항목으로 한다.

[별표 2]

수수료(제13조 관련)

구분	수수료
1. 시험, 검사, 교정, 제품인증 등 분야 공인기관 인정, 인정범위 확대 및 갱신평가	가. 공인기관으로 인정 및 재평가를 받으려는 경우 1) 신청 수수료: 50,000원 2) 문서심사비용: 심사비용 × 3일(기술문서 심사시 2일 추가) 3) 현장평가비용: 심사비용 × 평가 일수 × 평가자 수 + 출장여비 (심사비용, 평가자 수, 평가 일수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름) 나. 공인기관으로 인정받은 분야의 확대·변경 등 사후관리를 받는 경우 1) 신청 수수료 가) 확대 : 50,000원 나) 변경 : 20,000원 2) 문서심사비용: 심사비용 × 1일(단,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문서심사를 생략할 수 있음) 3) 현장평가비용: 심사비용 × 평가 일수 × 평가자 수 + 출장여비 (심사비용, 평가자 수, 평가 일수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름)
2. 경영체제 인증 분야 공인기관 인정, 인정범위 확대 및 갱신평가	가. 경영체제 인증 분야 공인기관으로 인정, 인정범위 확대 및 재평가 등을 받으려는 경우 1) 신청비 : 기본료, 인정신청 대상 분야의 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는 금액 2) 평가비용 : 문서, 현장평가 및 입회평가 수행을 위해 인정신청 대상 분야의 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는 금액 3) 인정등록 및 유지비 : 기본료, 인건비, 국제기구 가입 및 자격유지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는 금액
3. 경영체제 인정기구로 지정, 지정 확대, 변경 및 갱신평가	가. 경영체제 인정기구로 지정 및 재평가를 받으려는 경우 1) 신청 수수료: 50,000원 2) 문서심사비용: 심사비용 × 3일 3) 현장평가비용: 심사비용 × 평가 일수 × 평가자 수 + 출장여비 (심사비용, 평가자 수, 평가 일수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름)

	나. 경영체제 인정기구로 지정받은 분야의 확대·변경 등 사후관리를 받는 경우 1) 신청 수수료 가) 확대 : 50,000원 나) 변경 : 20,000원 2) 문서심사비용: 심사비용 × 1일(단,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문서심사를 생략할 수 있음) 3) 현장평가비용: 심사비용 × 평가 일수 × 평가자 수 + 출장여비 (심사비용, 평가자 수, 평가 일수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름)
--	---

비고

- 현장평가 등을 위하여 국내 또는 국외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등의 업무 또는 여비 규정(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말한다)에 따른 출장비를 추가로 계상한다. 이 경우 국외 현지 확인을 위한 출장기간은 실제 심사에 드는 기간과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 제2호가목에 따른 구체적인 수수료의 산정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 가. 기본료: 신청서의 접수·검토·인력지원·인정서 발급 등에 드는 실비
 - 나. 인건비: 인증기관 평가 활동에 투입된 인력의 인건비
 - 다. 국제기구 가입 및 자격 유지비: 국제 인정기구 가입 자격 유지 등을 위해 소요되는 인건비,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 라. 그 밖의 비용: 그 밖에 공인기관 평가를 위하여 지출한 경비로서 정보수집 비용, 현장 출장비, 추가적인 지출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현장 출장비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등의 업무 또는 여비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이전에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동일한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벌금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4)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28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기관을 인정을 받고 인정마크를 사용하거나 공인기관임을 표시한 경우	법 제28조 제1항제1호	3,0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나. 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정마크 또는 공인기관임을 표시·광고한 경우	법 제28조 제1항제2호	1,500	3,000
다.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인기관의 인정이 취소된 후 또는 사용중지기간 중에 인정마크를 사용하거나 공인기관임을 표시한 경우	법 제28조 제1항제3호	1,500	3,000
라.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기검사 또는 특별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8조 제2항제1호	500	1,000
마.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계 물품·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28조 제2항제2호	500	1,000
바.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8조 제2항제3호	500	1,000
사. 법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오류가 있는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법 제28조 제3항	250	500

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조사원증

(앞쪽)

제 호

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조사원증

사 진

3cm × 4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조사원증 인증번호

성 명

전문기관명

55mm × 85mm [보존용지(1종) 120g/㎡]

(뒤쪽)

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조사원증

소속

직급

성명

생년월일

위의 사람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조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
할 수 없습니다.
2.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
에 넣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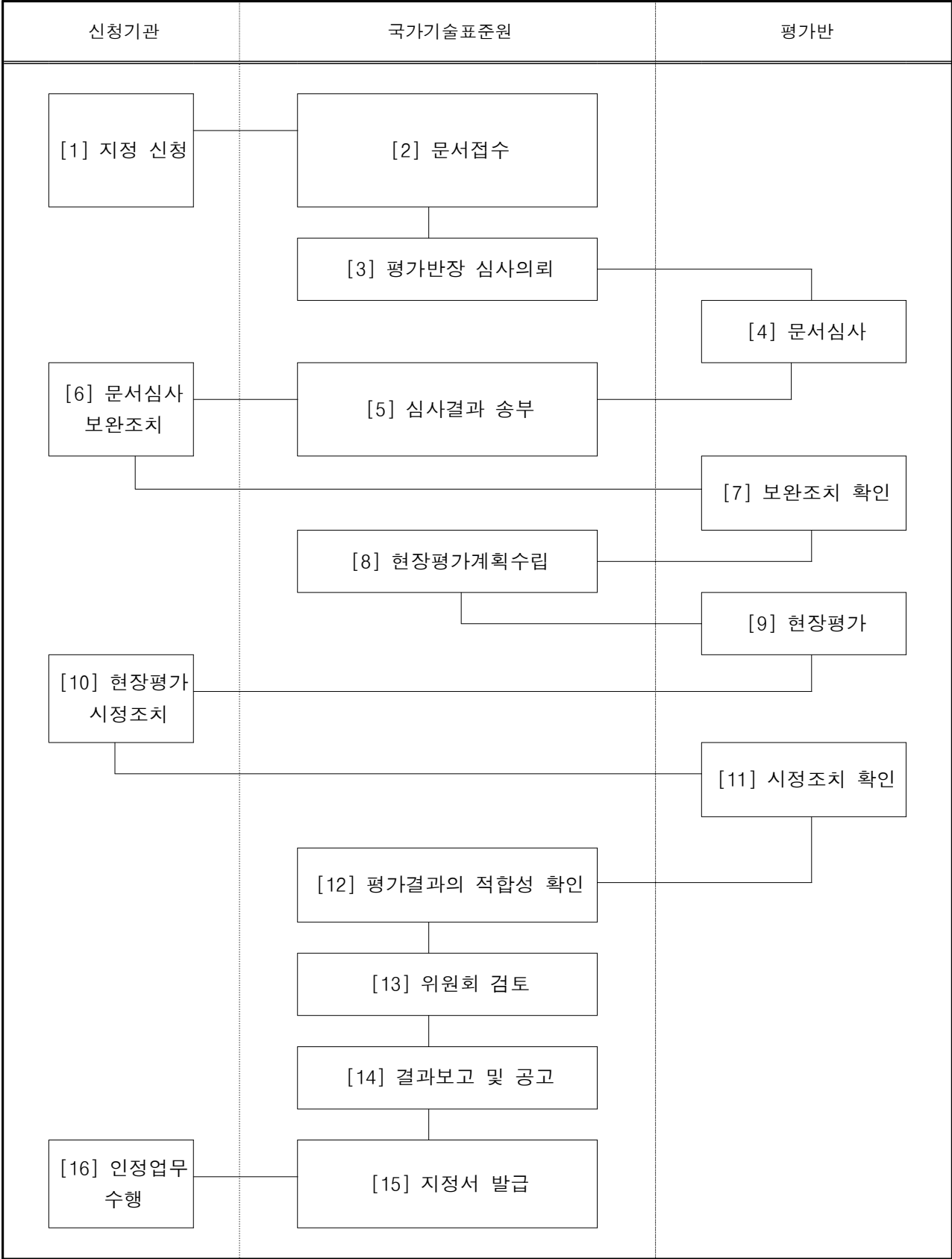
[별지 제2호서식]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신청서 (☐ 신규, ☐ 지정범위확대, ☐ 갱신평가)			처리기간 : 90일
기 관 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사업장 소재지	우 * 사업장소재지는 인정과 관련된 주요활동이 있는 모든 소재지를 기입	전화번호	
		FAX번호	
		전자우편	
신청분야	별첨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경영체제 인정기구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기술표준원장 귀하			
구 비 서 류			수수료
1. 일반현황 및 인력현황,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고유번호증(행정정보 공동 이용 시, 동의서 제출) 2. 지정신청분야(사업장별로 신청분야가 상이한 경우, 지정신청분야별 사업장을 기재하여야 한다.) 3.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실적 4. 품질매뉴얼 및 절차서			50,000원 (신규, 갱신평가) 20,000원 (변경)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서

기 관 명

지 정 번 호 :
법 인 등 록 번 호 :
(또는 고유번호)
사 업 장 소 재 지 :
최 초 지 정 일 자 :
지 정 유효 기 간 :
지정분야 및 범위 :
발 행 일 :

상기 기관을 적합성평가관리법 제 15 조에 의거하여 경영체제 인정기구로 지정합니다.

국 가 기 술 표 준 원 장

직 인